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86

발의연월일: 2020. 8. 26.

발 의 자:정진석·유상범·김승수

송언석 · 추경호 · 홍문표

김정재 · 김형동 · 정희용

임이자 · 김도읍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한 변경 허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2004년 이후로 엄격하게 통제되어 오다가, 2018년부터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하 "택배사업"이라 함)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내택배시장은 연평균 10%이상씩 운송물량이 증가하는 등 확대 추세에 있고,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택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택배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한 변경허가가 현재보다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택배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신규 허가 및 증차

를 수반하는 변경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대적 재량 기준을 2.5톤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택배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 등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제1호라목 신설).

법률 제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적재량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
가 등) ① ~ ⑥ (생 략)	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	⑦
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	
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u>.</u>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	1
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 설></u>	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
	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
	적재량 2.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u>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u>
	를 신청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⑧ ~ ⓑ (생 략)

⑧ ~ ⑮ (현행과 같음)